



외국인 여성 노동자 상담소 개소 1주년 심포지움

외국인 여성 노동자 무엇이 문제인가?

일 시 : 1997년 4월 29일 (화) 오후 2시

장 소 : 기독교연합회관 4층 중강당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외국인여성노동자상담소

기념 행
순 서

기념

사 회 : 이 혜숙 위원장
(본 상담소 운영 위원)

인사말 성봉희 회장
기 도 이정옥 부회장

● 발 제1 세계화와 이주민여성 이철순 대표
(여성 노동자회 협의회)

● 발 제2 한국의 국적법과 외국인 노동자의 결혼문제 손광운 변호사
(외국인 노동자 법률구조센타)

● 발 제3 외국인 여성 노동자의 선교적 과제 한국염원장
(아시아 여성 신학원)

● 질의 응답

외국인 여성 노동자 상담소 개소1주년 기념 심포지움을 하면서

“외국사람이 나그네가 되어 너희의 땅에서 너희와 함께 살때에,
너희는 그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와 함께 사는 그 외국인 나그네는
너희의 본토인 처럼 여기고, 그를 너희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 살때에는, 외국인 나그네 신세였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입니다.”

한국교회여성연합회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소외된자들과 함께 30년의 길을 걸어왔다. 우리는 일제시대에 민족을 잃은 약자로 일본에 강제 징용당해 가거나 정대신로 끌려 가서 원폭 피해자가 되어 돌아온 우리의 자매, 우리의 형제를 가장 먼저 끌어안았다. 그리고 이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하며 일해왔다.

우리회는 이제 또 다른 의미의 이웃으로 우리의 삶속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그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았다. 1995년 추운 겨울에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하던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하면서, 그들도 “95 회년을 향한 우리의 행진” 대열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이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1995년 제21회 총회에서 외국인 여성 노동자를 위한 사업을 새 사업으로 받아들여 사업의 첫걸음을 딙게 되었다. 1995년도에는 외국인 노동자 상담을 하고 있는 상담소를 방문하여 무엇이 문제이며, 우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연구하였고, 1995년 7월에 구성 된 외국인 노동자 대책협의회에 가입하여 연대활동을 시작하였다. 1995년 10월에 외국인 노동자의 날 행사를 다른 단체들과 함께 개최 하였으며, 1996년 5월2일에 드디어 외국인 여성 노동자 상담소를 문 열었다.

한국에도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하면서 외국인 여성노동자도 계속해서 증가하였으나 한국교회여성연합회에서 1996년 본 상담소를 개소할 당시만 하여도 외국인 여성노동자문제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상담소가 없는 상황이었으며, 외국인 여성노동자의 문제나 결혼 문제, 아이들문제등이 부분적으로 문제제기가 되거나 기사화되는 수준이었다. 이 시점에서 개최된 심포지움을 통해서 외국인 여성노동자 문제가 정리되어 논의가 구체화되고, 나아가서 제도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이 철순 (여성 노동자회 협의회 대표)

세계의 경제가 하나로 통합되는 세계화속에서 이주하는 여성 노동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가정의 생계를 위해서 이국땅에 와서 일하는 외국인 여성 노동자들이 이땅에 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여성들이 우리의 작은 힘을 모으고, 사랑의 품을 활짝 열어야 할 것이다.

1997년 4월 29일

한국교회여성 연합회

회장 성봉희
운영위원장 이혜숙
총무 윤문자

오늘날 많은 국가들은 세계화를 해야 한다고 말들을 하고 있다. 마치 세계 모든 나라에 무역과 투자를 늘려가겠다는 것 같다. 78년에는 세계인구의 단 35%만이 국제시장과 연관성을 갖고 있었으나, 2000년에 이르면 세계인구의 90%가 국제시장과 연관된 일을 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이는 나라들간의 무역을 모두 합친 것 즉 세계 무역량이 증가함을 뜻한다. 1970년대에는 경제와 연관된 세계화의 주요 도구는 다국적 기업에 의한 외국자본이었다. 다국적 기업의 지배가 증대하였고 세계 무역의 70%는 이들 대기업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350개의 기업이 세계 무역의 4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듯 세계경제가 통합될수록 자본의 국제적인 흐름도 증가하지만 국제적인 금융투자는 세계무역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되고 있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은 세계경제 흐름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기관들의 압력에 의해 남쪽의 많은 나라들은 산업구조 조정정책이 강요되어 왔고, 이 정책은 남쪽 나라들(후진국)에게 그들의 경제를 다국적기업에게 개방하도록 하였다. 즉 자유수출지역 등 특별한 지역을 만들어 다국적기업들이 원하는 조건속에서 생산활동을 했고, 남쪽 나라들의 저개발상황도 선진국들이 차별적인 무역협정을 유지하려고 하는데서 더욱 심화되었다. 대부분의 후진국(남쪽)들은 농산물 천연자원 즉 목재, 고무, 동, 알루미늄, 커피, 차 등과 같은 원자재를 생산 수출하고, 이들 국가들은 이 원자재들의 가격하락과 교역기간의 변화에 큰 영향을 쉽게 받는다. 1980년대에 있었던 일차 상품의 가격하락은 이 국가들에게 최악의 빈곤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이 국가들도 불공평한 무역협정때문에 다른 가공상품의 수출을 할 수 없다.

요즈음 컴퓨터 통신의 발달로 인해 현재 다국적기업들은 생산공정을 나누어 여러 나라에서 생산을 할 뿐더러 통제도 할 수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남쪽의 70여개 국가들은 자국의 서비스산업을 외국기업들에게(자본가들에게) 개방하는 협정에 서명했다. 이로 인해 외국의 은행, 보험, 운송, 통신기업들이 이들 국가에 자유롭게 진출해 영리를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전에는 공기업이었던 분야들이 서비스산업 구조조정정책에 따라 민영화됨으로 인해, 공공기업이었던 것들이 외국인 투자에 개방하게 된다.

세계화에 의한 영향

이전부터 지금까지도 이어져오고 있지만, 세계화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인구이동이었다고 본다. 인구의 이동은 경제, 정치와 관념 형태까지 자본에 의해 옮겨왔고 그들의 사업을 위해 이주를 강요했다. 식민지에서는 자신들의 농장이나 기업을 위해 타국(인근)에서 노동력을 강제로 끌어다가 그들의 농장과 공장에 투입하여 노예처럼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예. 스리랑카 차농장과 말레이시아 고무와 기름열매농장 등) 자본의 이동

은 자유수출지역을 만들었다. 그리고 공장을 설립하고 이 공장들을 운영하기 위한 노동력이 필요했고, 국가들은 농어촌민들을 대거 이동하도록 촉구했다.

무역자유화는 전세계의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물론 노동자에 대한 영향은 지역 국가마다 커다란 차이가 있겠으나 그중에도 여성노동자들이 받는 영향은 남성노동자에 받는 영향과 다르다. 무역자유화! 전반적으로 여성고용의 수요를 증대시키고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고, 이것이 무역자유화의 이점이라고 말한다.

여성노동자 수요증가는 아래와 같은 상황과 연결된다.

1. 노동형태의 유형- 무역자유화로 들을 보는 많은 산업들은 대부분 여성노동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2. 고용조건의 유형- 자유화조치는 임시직이나 파견직 노동자 등 유연성 고용전략을 쓰는데, 여기에 여성노동력이 더 편리하므로 여성노동력이 대거 투여되었다.

무역자유화는 수출생산을 증대시키고 국내소비품 생산은 감소시킨다. 이러한 증가는 남쪽 국가들의 의류, 신발, 가공식료품 산업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러한 세계시장, 시장형 공장들이 대체로 여성노동자들을 고용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여성고용이 증가할 가능성성이 높다.

무역과 투자의 형태

지난 3세기동안 거의 모든 아시아나라들은 유럽이나 북미의 식민지통치를 받았다. 그중에서 일본은 진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아시아국가들에 대한 투자와 무역확대를 통해 아시아지역에 시장을 확보해나갔다. 1990년 세계 전지역에 무역과 투자를 조정하는 선을 만들어가는 형상이 동시에 시작되었는데, European Economic Community(EEC) North American Free Trade Area(NAFTA) Asean Free Trade Area(AFTA) 등이다. 1990년, 세계는 발전된 아시아를 보았고 또한 미개발 아시아나라들을 보았다. 이들은 이미개발 아시아나라들을 무역과 투자의 중심으로 보고 있다. 신흥공업국(NICS)은 세계 여러나라에게 경제발전의 모델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아시아(미개발)와 다른 후진국에 투자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아시아 나라들중 몇나라들은 발전하여 다른 나라에 투자하는데까지 발전해왔고 그들의 물품을 합리화하기 위해 쌈 자재와 쌈 임금이 있는 미개발 아시아나라가 필요하다.

노동시장의 형태

아시아의 산업발전은 구조와 직업, 노동의 형태에 많은 변화를 보여 왔다. 먼저 농업노동에서 공업노동으로 옮겨졌고 요즈음은 공업에서 서비스산업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노동자의 기술력도 농업기술력에서 공업기술력으로 바뀌었고 신산업경제발전을 위해 서비스기술력도 요구되고 높아지고 있다.

노동력요구와 형태의 변화

부분별 생산품과 부분적인 계열회사를 쌈임금이 있는 나라로 옮기고 있다. 특히 노동집약적인 공업, 섬유, 전자, 방직 등은 일본에서 신흥공업국으로, 신흥공업국에서 미개발의 저임금나라로 이전하고 있다.

아시아에서의 자본투자는 노동자를 함께 들여왔다. 예로 토요타 회사는 노동자를 필리핀, 인도, 타일란드 등에서 고용하여 들여왔다. 그들은 외국인 노동자의 필요에 의해 고용하였으나 똑같은 조건속에서 자국의 노동자와 함께 일하게 하면서도 차별적인 임금을 받고 노동의 기준도 다른 조건에서 일하고 있다.

이주 노동자의 증가

여성의 고용기회의 불평등한 성장도 여성의 노동력 이동을 증가시킨다. 산업화에 따른 일자리는 특정한 지역에 한정되었고 농촌 사람들은 저곡가 정책에 의해 새로운 직업을 찾기 위해 산업화된 지역으로 일자리를 찾아 이동한다.

1995년 세계은행에 의하면 세계의 이주자들의 숫자는 오늘날 12,500만명에 달한다. 이 숫자는 1980년 IOM(International organisation for Migration)에서 발표한 숫자 5천만 명에 비하면 인구이동도 무척 증가하였다. 이 숫자들은 정착민 난민들 전문직 종사자와 계약노동자들 모두를 포함한 숫자이다. 물론 아프리카의 전쟁과 중동(Middle East)과 유고스라비아 전쟁과 동유럽의 공산주의 파계가 이주민의 숫자를 늘어나게 한 이유가 되기도 했다.

IOM에 의하면 정착자와 난민들을 제외한 이주노동자들만 세계에 2,500만에 달한다고 한다. 외국인 노동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CULF와 아시아에 천만, 유럽과 북미에 각각 4백만씩, 아프리카와 중남미에 각각 3백만씩이라고 한다. IOM에 의하면 이들중 3천만명의 이주노동자들이 비합법적인 불법체류나 비합법적인 노동자들이라고 한다. 사회학 측면에서 두가지 요소 - 밀어내는(push) 요인과 끌어당기는(pull)요인 - 들이 이주자들에게 작용하여 이주자들을 만드는 이유가 된다.

- 자국을 떠나게하는 요소: 많은 남아시아 나라들에서 경제계획이 실패함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나라에서는 사회보장과 고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찾지 못한다는 점들이 이들을 이동하도록 한다.
- 사람들을 이동하도록 끌어당기는 요인: 일자리가 많고 높은 임금과 더 유익한 사회보장이 될 수 있는 것들이다.

이 가난한 나라에서도 외국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과 외국에서 임금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이들을 이주하도록 만드는 요소이고 또한 그들의 해외 취업은 그들의 가족의 장기적인 사회보장을 주기도 한다. 외국인 노동자를 유입하는 나라에서 노동력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경계선을 넘어가려고 하는 이주자들이 없을 것이다.

특히 서비스산업의 확대는 특히 아시아와 같은 지역에서 여성의 이동을 유발시킨다. 가장 많은 노동력 이동은 아시아 내부에서 일어난다. 예로, 동남아시아에서 중동으로,

필리핀 여성이주노동자의 숫자는 남성보다 12배나 높다고 한다. 이 여성들은 대개 호텔 청소부, 간호사, 가계종업원, 유홍업과 가정의 가정부 등에 종사한다. 그들의 수입은 가족의 경제적 생존에 절대적이다. 그러나 그 대가로 그들의 육체적 정신적 안녕을 희생할 때가 많다.

아시아의 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각 나라 노동자들 사이에 불공평과 불평등을 가져왔다. 임금의 차이를 한 예로 들면, 일본 노동자는 한달 평균 US\$3,000을 받고 인도네시아의 똑같은 공장노동자는 US\$60, 필리핀에서는 US\$160이다. 반면에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아시아나라들은 실업자율이 높아가고 있고, 일본과 신흥공업국가들은 인력부족 현상이 계속 높아가고 있다. 일본과 신흥공업국가들에서는 외국인노동자들의 고용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나쁜 노동조건과 저임금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조직화 또는 노동조합에 가입되지 않기 때문에 자주 위험한 노동환경속에서 고통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

법의 보호에서 제외

일본과 한국 같은 나라는 구조적으로 이주자, 외국인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통해 노동자의 기본권리를 박탈한다. 이 국가들은 특정한 산업에 노동력, 특히 찬노동력이 필요하나, 외국인 노동자가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합법적인 권리가 막혀있는 이들에게는 잔인한 착취가 가해질 뿐이다.

외국인노동자들은 사회적 권리들도 박탈당하는 상태에 처해 있다. 싱가폴과 대만에서는 외국인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들어오고 있으나 이들의 결혼이 금지되어 있다. 특히 싱가폴에서는 외국인 여성노동자들은 매 육개월마다 임신 검진을 하도록 되어 있고 만일 임신이라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출국당한다.

아시아의 외국인 여성노동자들은 그들의 위치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에 있든 그들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그들의 남편과 아이들뿐 아니라 부모님과 결혼하지 않은 동생과 실업자 형제 자매들까지 책임을지고 있는 가장이다. 남편이 외국으로 일하러 간 경우, 여성들은 홀부모가 되고, 그들은 집안을 돌보고 아이를 낳고 기를 뿐 아니라 다른 가족들까지 쟁기고 돌보아야 한다. 이러한 두 상황은 별씨 여성들을 벤두리로 몰아넣고 있다.

과반수 이상의 외국인 여성취업자들은 가정부나 공장노동자 그리고 entertainers(접대부 혹은 무희)와 매춘부로 고용되어 있다. 보내는 나라, 받는 나라에서 아시아 이주여성노동자들은 여성으로서, 이중노동자로서 착취와 차별에서 고통당하고 있다. 여성에게 그들은 별씨 장애인이 된다. 그들도 남성을 왕으로 모시고 여성에게는 저임금의 일자리가 주어진다. 많은 아시아여성 중 글을 모르는 데다가 높기 때문에 그들은 고용주와 송출업자들과 직업소개소로부터 불이익을 당한다. 그들은 자주 속아서 노동계약서에 싸인하지만, 그들은 자주 계약한 임금보다 적게 받기도 한다. 가끔 이런 사건들은 노동법원에까지

여주지만 이들은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싸인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주노동자들 중 여성은 더욱 더 착취당하고 있고 육체적으로 성희롱을 당하는 일이 많이 있다.

여성화되어가는 국제 이주민

필리핀에 MORO여성센타에 의하면, 80년대 말부터 MORO의 젊은 여성들을 중동에 가정부로 보내기 시작했다. 이들 여성들은 이스람나라는 필리핀의 모스램 여성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자국을 떠났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 중 많은 여성들이 성희롱을 당했다. 5백 명 중 1백 명이 성폭행을 당하고 임금도 받지 못한 채 돌아왔다. 중동에서 이들이 당한 성폭행의 몇 가지 유형을 보면,

- 한 젊은 가정부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하다가 그들로부터 강간당하고 살해된 후, 그의 시신은 그의 부모에게 보내졌다.
- 쿠웨이트에서 일하던 여성가정부가 그의 남자주인에게 강간당한 후 임신이 되자 임금도 받지 못한 채,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물건도 쟁기지 못한 채 돌아왔다.
- 한 여성은 세명의 남성에게 강간당했다. 그는 4층에서 떨어져 많이 다쳐 장애인이 되었다. 그녀는 그의 아이들에게 학교교육을 시키고 싶었으나 그는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돌아왔다. 이 31세의 여성은 이라크에서 일하다 강간당하고 몸다치고 빈손으로 되돌아왔다.

국제이주노동자의 증가의 유형을 보면 첫째, 아시아 이주노동자들은 70년대 중동의 기름(producing) 생산에서 80년대부터 동아시아의 높은 경제성장의 나라로 바뀌었다. 그들은 주로 건설, 공장과 서비스 부문에서 노동력 부족의 현장에서 일한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의 노동조건은 아주 열악하고 아무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채 학대와 착취를 받고 있다.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비합법적인 노동자이기 때문에 폭력과 노동조건 등 모든 면에서 피해를 쉽게 보게 된다.

둘째, 여성화되어 가도 이주민들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여성이주자의 숫자는 별씨 많이 높아지고 있다. 예로 필리핀은 가장 많은 노동력 수출국이다. 이 나라는 해외 이주노동자 중 3명 중 2명이 여성이다. 그들의 주요 직업은 가정부와 접대부이다. 홍콩과 싱가포르와 다른 많은 나라들은 몇십만 명의 필리핀 가정부를 받아들이고 있다.

근래에 두 가지 인권 침해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싱가폴에서 Flora라는 여성이 살인죄로 사형선고를 받았고 15살의 Sara Balubagan은 그의 고용주에게 강간당한 후 살해된 사건이 있었다. 이러한 사건들이 비일비재하다.

모든 외국인노동자와 가족에 대한 보호에 대한 국제협정이 이루어졌고, 필리핀에서 1990년 받아들였다. 그러나 외국인노동자를 받아들이는 나라에서는 이 조항에 동의하는 것을 마음에 내키지 않아하고 있고 오직 몇 나라에서만 계약에 비준했을 뿐이다.

한국의 국적법과 외국인노동자의 결혼문제

발 제 : 손광운

(변호사,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법률구조센터 대표)

1. 서 경

실무에서 주로 발생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의 문제는 크게 3가지 형태이다. 산재, 임금체불, 구타에 따른 피해구제 문제이다. 그중 임금체불 사건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때때로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한 형사사건들이 있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피해자가 된 사례, 강도, 살인, 마약밀매 또는 소지로 인한 구속과 처벌 등이 그 예이다. 근로자들의 형사문제는 최근 들어 급증하는 추세로 본다. 거기에는 개인의 잘못도 있지만 임금체불, 비인간적인 학대등 구조적인 사회현실에 바탕을 둔 점도 무시 못한다. 그러므로 정부가 외국인근로자보호법 등을 제정하는등 적극적인 자세 전환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리고 최근 경향성이 있는게 결혼 문제이다. 외국인근로자의 수가 정부의 공식집계로는 96. 12. 말 현재 210,494명(산업기술연수생 68,020명, 합법취업자 13,420명, 불법체류자 129,054명)이 되므로 당연히 예상할수 있는 현상이기도 하다. 다만 우리나라의 보수적인 결혼관념, 전통적인 가치관 등에 따라 외국인과의 결혼 빈도가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될것같다.

최근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1,000명의 커플당 1쌍이 외국인과 결혼한다고 한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비교적 작은 문제일수 있다. 그러나 무시 못할 요소가 많이 있다. 그이유 때문에 이번 반제가 외국인 노동자의 결혼문제인 듯 싶다. 우선 수도권내 각 상담소마다 외국인노동자의 결혼에 따른 고충과 문의가 빗발 치고 있는 점이다. 이를테면 안산의 경우 약 100여건 이상의 상담실적을 올렸다는 얘기도 듣는다. 그리고 결혼에 따른 불안정한 생활관계, 자녀의 문제, 국적법이 지닌 위헌적인 요소가 이 문제를 언급하는 단초가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적어도 10여년이상 급속도로 한국의 산업구조가 재개편되지 않는 한 불법이든 합법이든 어떤 형식으로도 외국인근로자들의 숫자가 계속 증가할 것은 명백

한 사실이다.

본격적으로 국제인권관계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위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룰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 앞으로 국적법을 기초로 해서 외국인과의 결혼에 따른 문제들로 깊어보려고 한다.

2. 귀화요건의 차별

한국인 남자가 외국인여성근로자와 결혼할 때는 거의 문제가 없다. 대한민국 국민의 처가 된 자는 곧바로 한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국적법 3조 제 1호)

그러므로 그들 사이에 난 자녀도 한국국적을 취득함은 물론 호적상의 혼인신고를 적법하게 마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인 남자와 결혼한 외국인 여성은 한국인 여성과 다를 바 없게 된다. 결혼에 따른 법적인 지위와 보장 면에서는 완벽한 것이다. 뒤에서 보는 것처럼 국적법이 귀화요건에 있어 남녀간의 차별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한국 남자와 결혼한 외국인 여성근로자의 귀화요건을 엄격하게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다. 즉, 약 10,000쌍에 이르는 중국의 조선족 처녀와의 결혼이 사실상 사기결혼 등에 따라 파탄 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규제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3년간의 거주 요건을 첨부하여 국적 취득을 허가하자는 안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빼놓고는 결론적으로 외국인 여성근로자가 한국남자와 결혼하는데 따른 법률적인 제약과 한계는 없다고 보아도 괜찮다.

3. 언제 문제가 있는가.

한국인 여성이 외국인근로자 남자와 결혼할 때 비로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배우자 한쪽이 외국인인 점은 다를바 없다. 그러나 남편이 외국인이면 그에 따른 법적규제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게 우리 국적법이다. 우선 결혼당사자인 외국인 남자는 결혼과 동시에 그의 의사대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

국적법 제 3조 규정처럼 대한민국 국민의 남편이 된 자가 한국의 국적을 취득한다는 규

정이 없기 때문이다. 부부가 남편의 나라에 가서 살면 그것은 다른 문제가 된다.

두 번째 문제는 그들의 자녀들이다.

아버지가 한국인이면 자녀는 태어남과 동시에 한국국적을 취득하지만 부가 외국인이고 모가 한국인 일지라도 그 자녀는 태어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다.(국적법 제 2조 제1호) 입법론상 우리국적법이 출생하는 자녀들의 국적취득 요건을 이른바, 부계혈통주의의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남성위주의 사고방식, 가부장적 사회구조, 전통적인 가치관고수 등을 기초로한 입법형태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원칙적으로 호적법상 출생신고가 접수되지 않는다.

편법으로 동거인으로 등재될 수 있을 뿐이다.

동거인은 쉬운 말로 사생아를 뜻한다.

법률상 친생자임에도 호적의 등재를 위해서 이뤄지는 편법이다.

자녀의 동거인란에 외국인 남편의 기재는 허용되지 않는다.

주민등록도 마찬가지이다.

남편은 호적에도 주민등록에도 없다.

실체는 가정을 이루지만 형식은 반쪽가정이고 사생아를 둔 문제 어머니가 되는 것이다.

적어도 사생아 등에 대한 우리의 관념이 굽지 못한 점을 참작하여야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생아의 기록을 싫어하는 한국인 모친이 대다수일수 있는데 그때는 자녀 역시 호적이나 주민등록표에 자취가 없게 된다.

의료보험 혜택이나 초등학교 입학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런 가정이 장차 수천 명이라고 생각하면 더욱 심각한 것이다.

다만 자녀의 경우 특별귀화 신청을 할 수는 있다.

(국적법 제7조 제1호)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5년이상 계속거주, 만 20세이상, 생계유지능력 등의 요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국적법 제 7 조 제1호, 제5조, 시행령 제1조)

법무부관계자는 바로 이점을 강변한다. 비록 출생에 따라 곧바로 국적은 취득하지 못하지만 귀화신청에 따라 자녀는 국적을 취득하는 길이 있으므로 커다란 문제는

아닐 수도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부모중의 일방이 한국인임에도 국적취득 요건에 차이를 보이는 것은 시대 흐름에 뒤떨어진 입법형태라고 결론 지을 수 밖에 없다.

4. 실무상 제기되는 문제들

실무상 외국인 남성과 결혼한 한국인 여성 가정의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각 상담소별로 정리한 유형 등을 소개한다.

아기와 남편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병이 났을 경우 비싼 의료비를 지급해야 한다.

4살된 아기가 있는데 현재 무국적 상태이다.

당시 한국에서 결혼한 뒤 파키스탄으로 가서 혼인신고를 해 한국에 재입국 하였는데 남편은 비자를 동거인 비자(F1)를 받았다.

동거인 비자의 유효기간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년이다.(출입국관리법시행령 95. 12. 1자로 개정)

F1 비자는 취업비자가 아니다.

동거하는 가족의 방문과 체류만을 허가하는 비자이다.

취업하면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이다.

그 사실이 밝각되면 추방당할 위험이 있거나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 위험이 있다.

비자 갱신때 거절되는 사유가 되기도 한다.

이런 엄격한 국내심사를 피하기 위해 제 3국에서 재외공관의 입국절차를 반복하는게 실제 행해지고 있다.

평균 800,000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되니 그 부담이 무척 큰 것이다.

경제적인 문제와 의료보험의 문제로 아기를 파키스탄에서 시어머니에게 맡긴 경우도 있다.

네팔로 돌아가 S씨는 한국에서 불법체류한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네팔주재 한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지 못한채 혼자 네팔에 머물고 있다.

불법체류한 남편이 강제출국을 당할지 몰라 외부 사람들과 접촉을 삼가거나 아예 혼인 사실을 숨기기도 한다.

그러므로 사실상 정확한 실태 파악이 꽤 어렵기도 하다.

5. 입법례(일본중심)

우리나라 국적법 체계는 종전의 일본국적법과 거의 비슷하다.

그런데 일본은 84. 5. 25. 국적법을 개정하여 85. 1. 1부터 시행하였다.

우선 출생한자의 국적취득과 관련하여 부계혈통주의를 폐지하고 부모양계주의(父母兩系主義)를 채택하였다.

그러므로 출생시에 부 또는 모가 일본국민인 때 자는 출생에 의해 일본국적을 취득하는 것으로 했다.(일본개정국적법 제 2조 제1호)

그리고 배우자의 귀화요건의 평등화를 이루었다.

즉 일본인 남자와 결혼한 외국인 여자가 일본에 귀화할 때 일본에서의 거주요건, 능력, 생계요건 등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일본인 여자와 결혼한 외국인 남자가 귀화할 때에는 3년이상 거주 20세이상, 생계유지 능력등이 필요했다.

그러나 이법 개정으로 거주요건만 남녀구별 없이 3년(또는 결혼이 3년간 계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1년이상 거주)의 거주요건만 필요하고 나머지 능력 등의 요건은 필요없게 했다.(제 7조등)

(일본은 우리와 달리 외국인 여지가 일본인 남자와 결혼해도 곧바로 일본국적을 취득하는 규정이 없다.)

이 법은 '국적법에 있어서의 남녀평등을 실현'한 것으로 평가 받았다. 개정의 배경은 뒤에서 보는 UN의 여성차별 철폐조약(약칭CEDEW)의 비준을 앞둔데서 비롯되었다.

끝으로 출생한 자녀의 국적취득과 관련하여 부모양계주의가 세계 흐름임을 순응한데서도 찾을수 있다.

과거 부계주의를 채택했던 나라들이 모두 부모양계주의로 바꾸었다.

프랑스(1973), 서독(1984), 스위스, 덴마크(1978), 스웨덴, 노르웨이(1979),

포르투칼(1981), 스페인(1982), 오스트리아, 이태리(1983), 그리스(1984) 등이 그 예이다.

일본의 경우 위 개정법 시행으로 외국인을 부로서 일본인을 모로서 이미 태어난 자녀 8만명이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중 6만명이 재일 한국인이었다.

6. 국적법의 위헌성 등

부계열통주의와 귀화요건에 있어서 남녀차등을 둔 국적법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헌법위반의 요소를 지니고 있다.

가. 평등권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1조 제1항)

아울러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제 10조)

위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판단 기준은 차별사유가 얼마나 ‘합리적’이고 ‘상당성’이 있는가에 두고 있다. 적어도 국적법에 있어서의 남녀 차별은 합리성과 상당성 있는 요소가 결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쉽게 얘기하면 차별하는 이유가 설득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다. 국적법 관계 규정은 헌법이 규정한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본다.

나. 민법개정취지

민법규정 중 가족법관계 규칙은 이미 90. 1. 13자로 대폭 개정되었다. 개정의 취지는 남녀평등을 꾀하는데 두었다.

그리하여 출가한 여자의 상속지분이 종전에는 4분의 1이었는데 남자와 동일하게 되었다. 호주승계로 인한 상속지분의 차이도 없다.(민법 1000조, 1009조)

이혼할 때 배우자가 상대방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인정하였다. (제839조의 2)

이런 민법개정의 취지에 비추어도 국적법 조항은 시대에 뒤떨어진 법이 되고 있다.

다. UN 여성차별철폐 협약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이 협약은 1981년에 발효되어 1995. 12. 현재 144개국이 비준하였다. 한국도 90번째 서명국이 된바 있다.

위 협약은 제1조에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사실상 부정 또는 제한 하는 여성에 대한 차별은 기본적으로 정당하지 못하며 그것은 인간존엄에 대한 위법이다.’라고하여 위 협약의 목적을 선언하고 있다.

국적과 관련한 조항은 제 9조이다.

“체약국은 여성의 국적을 취득, 변경 또는 보호함에 있어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한다. 체약국은 특히 외국인과의 혼인 또는 혼인중인 남편의 국적변경이 자동적으로 처의 국적을 변경하거나 처를 무국적으로 만들거나 남편의 국적을 갖도록 처에게 강제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제9조 제1항)

‘체약국은 여성에게 자녀의 국적에 관하여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한다.’(제2항) 이 규정에 따르면 부계열통주의를 따른 우리 국적법은 위 규정 위반이다.

비록 CEDAW가 사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국제적인 수준의 인권관계 협약인 만큼 사실상 규범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적법 관계조항은 헌법은 물론 국제사회의 여성관계 헌법인 CEDAW에도 위배되고 있다.

아울러 유엔현장전문, 세계인권선언 제2조, ICCPR 제2조 등 어떤 종류의 차별도 금지한 국제인권 규정에도 배치되는 것이다.

외국인여성노동자의 선교적 과제

한국 염

아시아여성신학교육원원장

1. 문제제기

문제 1. 유린당하는 외국인여성노동자의 인권현실

지난 여름에 8명의 중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지낸 일이 있다. 이들은 원래 우리 교회의 손님은 아니었다. 작년 6월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일하던 성남외국인노동자의 진 소장인 김혜성목사와 양혜우국장이 공무집행죄로 구속된 일이 있다. 날로 심각해지는 외 국인노동자 인권문제에 대한 대책논의,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과 김혜성목사와 양혜우 국장 석방을 위해 13개의 단체들이 모여 외국인노동자 인권보호와 김혜성목사 석방을 위한 범 기독교 대책본부를 결성하였다.¹⁾ 때마침 성남시 판교에 있는 금양물산에서 현지법인 연수생 자격으로 취업중이던 주지령(여.23세)을 비롯한 8명이 7월 10일에 임금체불과 강제노동, 폭행, 성추행, 강제출국 혐박 등에 끊이겨 회사를 탈출하여 대책본부를 찾아왔다. 이들이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을 때 금양물산은 이들을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하였고 법무부는 이들을 잡으려 기독교회관에 와서 감시하였다. 신변의 위협을 느껴 불안에 떨고 있는 이들을 기독교회협의회에 보호를 요청하여 그곳에서 2주일을 지냈다. 때는 여름이라 농성도 힘들고 중국인들은 매우 지쳐있었다. 그때 남편 최의팔목사가 대책본부장으로 있었다. 우리는 마침 우리교회가 수련회를 가기로 한 가평 어느 산기슭으로 이들을 빼돌려 같이 수련회를 했다. 수련회 후 교회가 안전할 것 같아 우리 교회로 이들을 피신시켰다. 이들 8명 중 3명은 중국에서 온 촌장들의 협박에 끊이겨 귀국했고 다른 사람은 다른 곳에 취직해서 일하다가 발각되어 본국에 소환되었다. 한명은 아버지가 편찮아 지난달에 귀국하였다. 이들과 지내면서 내가 느낀 것은 어쩌면 한국인들이 이나지도 잔인하고 악랄하게 착취적인가? 하는 회의였다. 이 일을 계기로 우리 교회에서 외국인 노동자 선교센타를 개설, 활동중에 있다. 다음은 이들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을 간추려 외국인노동자들 겪는 고난의 한 사례로 밝히고자 한다²⁾.

금양물산은 중국 청도에 현지법인 공장을 두고 있는 가정표양말제조 회사로 한국의 공장은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위치해 있으며 현지 종업원은 모두 도급제인 일용직이다. 금 양물산은 중국 한족 여성 18명을 현지법인 연수생이란 명목으로 데려와 단순노동을 시키 웠다. 회사측은 임금지급을 1년에 한 번 결산하여 지급하되 임금전액은 중국 청도 회사에서 가족에게 직접 지불하기로 하였다는 일방적인 계약을 하고도 1년동안의 임금 지급 일이 3개월이 지나도록 지불하지 않았다. 임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자 96년 5월 30 일 중국 노동자들은 임금지급을 위한 농성을 벌였다. 그러나 사업주는 또다시 지급 약속 을 어겼다. 결국 이들은 목숨을 건 무기한의 단식을 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4명의 중 국인 노동자가 실신하여 병원으로 실려가게 되었다. 단식농성 후 겨우 임금을 받을 수

1. 이 대책기구에 교회여성기관으로 교회여성연합회, 아시아여성신학교육원, 여성교회가 참여하였다.

2. 이 자료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발행한 계간지 "인권 37"호에서 발췌한 것이다.

심각하게 개정을 고려할 때이다.

7. 무엇을 할 것인가.(결론)

가정 먼저 구체적으로 할수 있는 일은 국적 확인소송을 생각할수 있다.

한국인 어머니와 외국인 아버지를 둔 자녀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적확인의 소를 제기하는거다.

현행 국적법 규정에 따르면 당연히 기각 또는 각하 사유다.

그러나 앞서본것처럼 위헌사유가 명백하므로 각급 법원에서 위헌제청이 이루어 질 가능성도 크다.

결국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일찍이 독일에서는 헌법재판소가 1974.경 부계혈통주의는 위헌이라고 결정하여 국적법이 부모양계주의로 개정된바 있다.

일본에서도 1977년과 78년경에 걸쳐 두차례 소송이 진행된바 있다. (동경제판, 소화 52년 제360호사건, 소화 53년 제 175호 사건)

동경지방재판소의 판결이 재미있다.

"양성평등원칙의 의의와 가치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이중 국적방지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부계우선 혈통주의가 헌법정신에 위반하지 않는 것을 뒷받침하기에는 아직 불충분하다고 해야한다"고 하면서도 "부계우선 혈통주의 결과 일본인모의 자이면서도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없게되는 자에 대해서 간이 귀화의 길을 열고 일본인 부의 자와 차별없는 지위를 취득하는 것을 간이하게 하고 있다." 이중 국적 방지의 필요성과 유용성이외에 위와 같은 보완적인 간이 귀화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한도에 있어서....

'이것을 현재하게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하는 비난을 간신히 회피할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결론적으로 헌법과 국제인권 협약에 합치되는 국적법의 개정을 논의할 단계가 되었다고 믿는다.

있었지만 회사측은 단식농성을 이끌어온 5명을 회사 규정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동자 6명을 7월 13일 강제출국 시키겠다고 선포했다. 그리고 이들이 계약기간(2년)을 체우지 못했으므로 배삯(43만원)과 일체경비는 본인부담이며 남은 3달의 임금지급도 중국에서 지불한다소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들 6명은 “한국에서 잘못한 일이 전혀 없으며 매월 지급해야 할 임금을 1년후에 지급하겠다는 회사의 일방적인 요구도 받아들였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회사이며 우리들의 저항은 1년치의 월급을 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몸부림 이었다. 그리고 더욱 참을 수 없었던 것은 한국인 주임으로부터 당한 성적 추행을 생각하면 끔찍하기만한 공장생활이었는데 이제와서 얼마되지 않는 임금 마저 주지도 않고 강제로 출국시키려는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고 하소연했다.

이들 14명의 노동자 중 주지령외 3명의 계약서는 연수계약서가 아닌 노무자 계약서로 명시되어 중국 현지 사장과의 통화 중 “한국에 노무자 자격으로 일하려 갈 수 없으니 인수행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며 노동자가 연수생으로 둔갑된 사실을 토로하였다. 결국 이들이 먼 한국땅에 와서 배워야 하는 기술은 공장밖에서 박스를 나르거나 양말을 포장하는 일 스티커 부치는 작업이었던 것이다. 중국노동자들은 계약파기자가 회사측이었음에도 강제출국 당할 위기에 놓이자 그 역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공장을 몰래 빠져나와 인권단체에 도움을 의뢰하게 된 것이다.

근로조건

18명의 중국인노동자 중 숙련공은 4명이었고 나머지는 단순노동직에 종사하였다. 공장에서 하는 일은 연수를 위한 기술습득 보다는 상자운반, 포장, 양말에 스티커 붙이는 일 등 단순노무직에서 일했다. 임금은 단순노동직은 월 1백달러, 숙련공은 2백달러 였다. 그 무시간은 점심식사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10시간 근무하도록 되어있으나 1일 2교대로 하루 12시간 근무할 수밖에 없었다. 연장근로시 시간당 3백원의 수당을 주었다. 외출이 금지되었으며 실제로 노예와 같은 삶을 강요당했다.

음식은 공장에서 제공했으나 야간근무시에는 야식을 주지 않아 12시간을 짚은 채 일하고 간식으로는 여름에는 냉수, 겨울에는 보리차가 고작이었다. 비누, 치약, 화장지는 회사가 지급했으나 속옷 등 필요한 물건은 살 수가 없었고 이발은 3개월에 1번씩 허용되었다. 아파도 전혀 쉴 시간을 주지 않고 강제로 일을 시켰다. 단식 후 4명이 탈수현상으로 신려갔을 때 10일간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병원측의 진단이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았다.

95년 10월 17일에는 생산주임이 중국인노동자 한명에게 가위가 필요하다 해서 찾으러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무엇인가로 때려 피가 줄줄 흐르고 통증이 심했으나 회사에서는 약조차 빌라주지 않았다. 노동자들이 항의하자 오히려 한 여성에게 달려가 욕을 하며 혀가 밖으로 나올 정도로 목을 졸랐고 다른 여성들의 따귀를 수차례 때렸다.

여성들이 겪는 성폭행

여기까지는 전반적인 외국인노동자들이 겪는 수난이다. 여기에다 여성노동자들은 성희롱은 다반사고 심한 경우 성폭력까지 당한다. 금양물산의 경우만 하더라도 이들 중국인 여성들은 직장주임과 기사들에 의해 거의 매일 여성노동자들의 엉덩이를 두들기고 밟아놓고 얼굴을 만지며 끌어않는등 성희롱을 당하였다. 가공부주임이 술을 마시고 여자숙소로 들어와 여성 한명을 밖으로 끌고 나갔다. 간신히 도망쳤으나 모두 놀라 떨었다. 한국 남자에 대한 두려움과 설움 속에서 눈물로 보내야 했다고 한다. 이들 중국여성들은 술먹은 남자만 보면 안색이 달라지곤 한다. 이렇게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노동

자들을 위한 선교적 과제는 무엇인가?

문제 2. 외국인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선교와의 관계

위의 중국인여성노동자의 문제에 접하면서 내가 놀란 것은 이 금성물산의 사장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이었다. 그는 당시 기독교대책본부장인 남편과 만난 자리에서 그 교회의 집사인데 교회 출석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잘하는 독실한 신자라고 자신을 소개하였다. 문제는 자신의 한 일에 대해 전혀 잘못이라고 생각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중국현지에서는 3만원밖에 안주는데 자신은 월 8만원을 주니 오히려 많이 주는게 아니냐고 큰 소리쳤다. 외출이라고는 한달에 한 번 교회예배에 출석하게 하는게 고작이었는데 사장은 그렇게 외출을 안시키는 이유를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이 중국여성들 중에는 중국에서부터 교회에 다닌 사람이 있는데 한국에 와서는 기독교에 대해 회의를 갖게 되었다. 기독교인 사장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인권유린을 당하고 보니 기독교에 대한 좋지 않은 인상을 갖게 되었다. 이들이 기독교에 대해 새로 인식하게 된 것은 기독교대책본부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였다. 통역을 했던 조선족할아버지는 자신은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성남외국인의 집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우리 교회를 통해 기독교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고백하였다.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을 하다 보니 저절로 선교가 된 것이다.

그 반대의 경우가 있다. 앞의 경우처럼 기독교인 기업가가 외국인노동자에게 비인간적으로 대하면 오히려 기독교를 욕먹이고 선교의 장애요인이 된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노동자를 삶 취급하지 않는 한국풍토로 인해 “한국인 개새끼”라는 책이 동남아에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한국인이 테러의 대상이 된 오늘의 현실에서 외국인선교라는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현지에 나가 해외선교를 하고 있는 한국선교사들의 경우 한국말을 잘하는 현지인을 기피하는 현상이 많다고 한다. 이들은 대부분 한국에 노동자로 왔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한국에서 당한 수난을 현지 선교사들에게 화풀이 하는 경우가 많고 한국에 대해 나쁘게 이야기 하기 때문에 선교의 장애요인이 된다고 한다. 아무리 선교를 열심히 해도 선교국 당사장인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나쁘면 그 선교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외국인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선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문제 3. 해외선교의 장으로서의 외국인노동자선교의 가능성

지금 우리나라에는 해외선교바람이 불고 있다. 그동안 선교를 받기만 했는데 이제는 주는 교회로 탈바꿈한다고 하며 해외선교에 대한 열의가 대단하다. 막대한 선교비와 선교사가 외국으로 나간다. 그런데 해외선교에 쏟고 있는 이 열의를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노동자선교에 쏟는다면 어떨까? 예를 하나 들어보자. 인천에 있는 그 공장은 장로님이 운영하는 곳이다. 이 공장에 동남아에서 온 외국인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데 장로님이 이들을 성심성의껏 돌보았다. 이들중 일부가 장로님께 감화를 받아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모슬렘교인들이었다. 계약 기간을 마치고 이들이 고국에 돌아갔다. 고향에 가서도 이들은 기독교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 마을 사람에게 박해를 받았지만 그 좋으신 장로님이 믿는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다고 굳게 버텼고 결국에는 그들의 가족 까지도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이야기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17만명의 외국인노동자들이 코리아드림을 꿈꾸며 돈을 벌겠다고 들어와 합법적으로 불법적으로 일하고 있다. 이들의 대부분은 필리핀을 제외하고는 비기독

교국가에서 온 사람이다. 그런데 이들 외국인노동자의 70% 이상이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20-30대의 젊은 사람이다³⁾. 이들이 비교적 젊고 고학력자라는 것은 이들이 고향에서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이들의 인권을 보호해주고 복지선교를 편다면 장기적으로 해외선교의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외국인노동자선교에 대한 이런 식의 접근은 바람직한 접근은 아니다. 단지 우리 품에 들어 온 사람들을 선교하는 것이 해외선교에 직접 나가서 하는 것보다 효과적인 것이라는, 외국인노동자선교에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관심을 촉구하는 것일 뿐이다. 선교에 대한 이런 계신적인 자세는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맨처음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여성과 가난한 이를 선교의 일차 대상으로 삼은 것이 우리나라의 여성이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선교적 효과를 노린 것에 대한 비판점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외국인노동자선교에 관심하는 것은 기독교 인구 하나를 더 늘린다는 식의 발상에서가 아니라 외국인노동자 바로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답게 살도록 한다는데 우선점이 있어야 한다.

II.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인권선교 내지 복지선교의 당위성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펴는 일은 외국인선교에 관심 있는 몇 사람이 특별히 하는 일이 아니라 기독교인 모두의 일이다. 왜냐하면 외국인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성서에서 외국인(이방인)을 나타내는 말로 구약에서는 게르, 토샤브, 노크리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이중 노크리는 이방신을 들여오는 사람들이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대국의 원수들을 말한다. ‘게르’는 ‘그 땅의 합법적인 소유자가 되지 못하고 친척도 없고 자기 목소리를 낼 수도 없는, 그 나라의 범률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로 어쩔 수 없이 날풀팔이꾼이 된을 가리키는 말이며 ‘토샤브’는 게르 보다 더 힘이 없는 자들로서 게르, 토샤브 모두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언급하고 있다. 신약에서는 이방땅에 거주하는 이스라엘인이나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이방인을 뜻하는 게르와 동일한 의미로 쓰고 있는 파라이코스 외에 기독교인 자체를 하늘나라에 시민권을 두고 이 세상에서 사는 임시 나그네 내지 임시 거류인으로 묘사하는 파레피데모스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⁴⁾

구약성서에서 하나님은 외국인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로 이스라엘 민족이 떠돌이였으며 이집트에서 봄붙여 살던 외국인이었음을 상기시키고 있다. 신약에서는 우리 모두가 이땅의 임시 거주자(벧전 1:2:11)임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내가 굳이 외국인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밝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어차피 “외국인”이라는 동질성을 갖고 외국인노동자 문제를 접근해보자는 뜻에서이다.

외국인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스라엘민족에게는 외국인보호를 위한 약자보호법을 지킬 의무가 있었는데 추수법과

3. 유혜근, “한국교회의 외국인근로자 선교현황과 과제”, 외국인근로자선교 어떻게 할것인가? 예장통합정책위원회 96년 10월 1일 한 자료집 p.36

4. 김경호, “성시에 나타난 이방인들”, 외국인노동자선교를 위한 실무교육 자료집, 1996년 11월

십일조 법, 첫 열매를 드리는 법등 세종류의 법이 있었다.

1) 가난한 자와 외국인을 위한 이삭남기기 법

신명기 24장 19-22에 의하면 이삭은 가난한 사람들의 뜻이다. 이스라엘은 추수할 때 이삭을 썩 훑어 자기 집에 가져 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너희 땅에서 거두어들일 때, 밭에서 모조리 거두어들이지 말아라. 거두고 남은 이삭을 줍지 말라. 가난한 자와 봄붙여 사는 외국인이 거두도록 남겨두어라.”(레위기 19:9-10)

“너희가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거든, 그것을 가지려 되돌 아가지 말아라. 그것은 외국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돌아갈 뜻이다. 너희는 우리 브나무열매를 딴 뒤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아라. 그 남은 것은 외국사람과 과부와 고아의 뜻이다. 너희는 포도를 딸 때에도 따고 난 뒤에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아라. 그것은 외국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이다. 너희는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를 기억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19-22). ”

외국인, 과부, 고아는 공동체가 보호해야 할 대상인데 이들을 보호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셨다. 따라서 외국인, 고아, 과부는 그 공동체에서 가장 힘없는 대상인 바이들의 보호와 하나님의 복은 서로 직결되어 있다. 약자 평에 서계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이스라엘 민족은 가난한 이들이 이삭을 주을 수 있도록 남겨놓는 전통을 만들었다.

이 이삭줍기를 허용하는 법은 신명기 24장의 약자 보호법과 관계가 있다.

“같은 거래나 너희 땅 성문 안에 사는 외국사람 가운데서, 가난하여 품팔이 하는 사람을 억울하게 해서는 안된다. 그날 품삯은 그날로 주되, 해가 지기 전에 주어야 한다. 그는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날 품삯을 그날 받아야 살아갈 수가 있다. 그가 그날 품삯을 못받아, 너희를 원망하면서 주께 호소하면, 너희에게 죄가 돌아갈 것이다(14-15절). ”

2) 과부, 고아, 외국인, 레위인을 위해 삼년마다 드리는 십일조 법

신명기 14:28-29, 26:11-19에 의하면 하나님은 3년마다 소출의 십일조를 떼어 레위인, 외국인, 과부와 고아에게 나누어 주어 그들이 성안에서 마음껏 먹게 하라고 명령하셨다.

“너희는 매 삼년 끝에 그 해에 난 소출의 십일조를 다 모아 성안에 저장하여 두었다가 너희가 성 안에, 유산도 없고 차지할 뜻도 없는 레위 사람이나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하라. 그리하면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가 경영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이다(신 14:28-29). ”

“세 해마다 십일조를 드리는 해가 되면, 너희는 너희의 모든 소출에서 열의 하나를 따로 떼어서 그것을 레위 사람과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이 너희가 사는 성안에서 마음껏 먹게 하여라. 그렇게 할 때에 너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어라.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 집에서 성물을 내어 레위 사람과 외국 사람과 과부와 고아에게 다 나누어 주어서 주의 명령을 잊지 않고 어김없이 다 실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애곡하는 날에 이 거룩한 열의 한 뜻을 먹지 않았고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십일조에 관하여 명하신 것을 그대로 다 지켰습니다

3) 첫 열매를 드리는 법

이스라엘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 조상은 떠돌아다니며 사는 아람사람으로서” 하고 자기 선조가 외국에 몸붙여 살던 사람임을 고백한다.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어 가나안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예물을 드린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준 모든 좋은 것들을 레위사람과 외국인과 함께 누리도록 되어있다.

“너희는 그것을 주 너희의 하나님 앞에 놓고,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레위 사람과 너희 가운데 사는 외국 사람과 함께,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와 너희 집안에 주신 온갖 좋은것들을 누려라(신26:10-11)”

이렇게 하나님은 외국인을 위해 이삭을 남기는 법, 삼년마다 십일조를 내어 보호도록 하는 법 등을 제정해주실 뿐만 아니라 급기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해준 온갖 혜택을 같이 누리도록 명령하신다. 온갖 좋은 것들을 외국인과 같이 즐기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결국 외국인이라고 차별하지 말고 자기 동족이나 가족처럼 지내라는 말이다.

4) 약자보호법의 이상적 모범으로서의 외국인보호법

“너희 동족 가운데, 아주 가난해서, 도저히 자기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너희 곁에 살면 너는 그를 돌봐주어야 한다. 너는 그를 나그네나 임시거주자(외국인을 말함)처럼 너와 함께 살도록 해야 한다(레위기 25:35).”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외국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얼마나 배려하고 있는지 잘 드러난다. 가난한 동족을 보호하듯이 외국인을 돌보아주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자기 동족을 외국인처럼 잘 대우하라고 할 정도로 외국인 대우가 약자보호의 이상형으로 나타나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외국인 이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복지를 평등하게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그들이 남의 나라에 몸붙여 살던 나그네였기 때문이다.

“너에게 몸붙여 사는 외국인을 네 나라 사람처럼 대접하고 네 몸처럼 아껴라. 너희도 에집트 나라에 몸붙이고 살지 않았느냐? 나 야훼가 너희 하나님이다.(레위기 19:34).”

우리 민족도 많은 이주 경험을 가지고 있다. 원래 우리 민족은 중앙아시아에서 이곳 한반도로 이주해 온 사람이며 일제시대에는 많은 사람이 일본에 끌려가 종살이를 해야 했다. 60-70년대는 조국이 가난하여 돈을 벌려 독일에 광부와 간호원으로 가 외국인 노동자로 산 사람도 많으며 대다수가 귀국하지 않고 독일에서 이주민으로 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민 간 많은 사람들은 그 나라에 이주민을 위한 복지정책을 세우고 이민자의 인권을 보호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경험을 직접 간접으로 갖고 있는 한국인으로서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평가는 성서의 가르침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야 할것이다.

III. 외국인여성노동자의 선교적 과제

그러면 성서에 입각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선교를 한다고 할 때 특히 외국인여성노동자 선교를 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며 그 과제는 무엇인가? 나는 외국인여성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는 롯기를 통해 외국인여성노동자의 선교적 과제를 풀어버려고 한다.

롯기는 이방인 여성을 주인공으로 하는 본문이다. 전통적으로 롯기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거나 이방인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행위를 선포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있다⁵⁾. 그러나 이 롯기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은 인종차별, 민족차별, 계급차별, 성차별을 헤서는 안되고 오히려 가난한 이주민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롯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나오미라고 불리우는 한 여인이 모압에서 살고 있었다. 그들이 거기 머무는 동안 남편과 두 아들이 죽어버렸다. 나오미는 며느리가 둘 있었는데 모압이자들이었다⁶⁾. 남편과 두 아들이 죽은 후 나오미는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⁷⁾.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데리고 나오다가 도중에 마음을 고쳐먹고 며느리들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한다. 며느리들이 계속 시어머니를 따라가려고 하자 나오미는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기 때문에 며느리들에게 남편감을 마련해줄 수가 없다며 돌려 보낸다.⁸⁾ 그러나 둘째 며느리 롯은 기어코 홀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나선다. 베들레헴에서의 나오미와 롯은 생계가 막연해진다. 그래서 롯은 이삭을 주으러 나간다. 외국인 노동자로서의 삶이 시작된 것이다. 롯이 이삭을 주으러 간 밭은 공교롭게도 나오미의 남편과 한 집안사람인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다. 이미 롯의 이야기를 알고 있던 보아스는 롯에게 친절히 대한다. 점심을 나눠주고 자기 밭에서 추수가 끝날 때까지 이삭을 춥도록 허락한다. 롯이 이삭을 춥도록 한 밭주인이 보아스인 것을 안 나오미는 며느리 롯의 행복을 위해 보아스에게 시집 보내기로 마음 먹고 작전을 짜서 결국 롯은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 아들을 낳아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다는 이야기다.⁹⁾

1) 외국인여성노동자와 함께 하는 연대와 자매정신

이야기 자체는 이렇게 간단하지만 롯기의 이야기에는 많은 내용들이 담겨있다. 첫째는

5. 롯기가 예즈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있었던 이방인들에 대한 배차적인 태도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편집상의 배열로 보아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롯기는 이방인에 대해 배타적이 아니다. 나오미 가족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주한 것은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이었는데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했던 것을 미루어 모압인들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었다고 보여지며 모압에서 비교적 안락한 삶을 살았던 듯하다. 이런 우호적인 관계가 후에는 배타적으로 변한 것으로 미루어 롯기의 집필시기를 왕국시대 중엽으로 잡는다.

7. 당시에 기근은 중요한 이주의 원인이다. 아브라함도 야곱의 식구들도 기근 때문에 이주를 하였다(창세기 12장 참조).

8. 형의 사후에 형수와 결혼해서 형의 대를 이어주는 레비라토제도는 고대에 이미 널리 알려진 제도였으며 이스라엘은 율법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다. 이 레비라토법은 롯기의 중요한 배경이다.

9. 롯이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다는 다윗가의 계보는 후에 첨가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계보는 마태복음 1장의 예수 계보의 기원이 되었다.

연대와 자매정신의 모습이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자 이렇게 말한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니의 겨례가 내 겨례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입니다(룻기 1장 16절).

여기서 우리는 룻의 자세를 눈여겨 보아야 한다. 많은 경우 이 본문은 시어머니를 삼기는 룻의 부덕을 찬양하는 것으로 설교된다. 그리고 나오미를 본받아 시어머니를 끝까지 봉양하는 것이 기독교 여성의 미덕으로 강조된다. 그러나 이 본문은 가부장제를 지탱하는 여성의 미덕을 찬양하는 본문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외롭고 힘없는 여성에 대한 한 여성의 나이와 국경을 초월한 자매정신과 연대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룻은 고향에서의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힘없고 소망을 잃은 한 여성의 편에 서기로 한다. 다른 여성의 편에 서기 위해서 룻은 일신상의 편안함은 물론 민족과 종교까지도 포기한다. 자칫 룻이 자기의 신을 버리고 나오미의 하나님을 선택한 것에 대해 하나님 우월주의를 내세우거나 시집을 왔으면 시집종교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도 있다. 나오미의 고향을 자기 고향으로, 나오미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기로 한 것은 가부장적 가족제도를 맹목적으로 따른다거나 기독교의 우월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나오미와 함께 떠나는 룻의 이야기는 진정한 연대란 힘 가진 자가 약한 자의 편에 서서 철저히 자기 것을 포기하는데서 가능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오늘날 외국인노동자에 관심을 갖는 한국교회의 대다수는 외국인노동자의 인권문제보다는 외국인노동자를 기독교로 개종시키려는 선교적 측면에서 접근한다. 그러나 진정한 형제, 자매애는 자기가 갖고 있는 강한 힘을 바탕으로 개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한 상대의 종교를 포용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들의 편에 서는 것이다. 힘을 바탕으로 개종을 추진하는 것은 제국주의적 발상으로 바람직한 선교가 아니다. 한국에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이 기독교인이 된 예를 보면 외국인노동자를 사람 대접해 주었을 때 감격해서 “그분이 믿는 하나님으면 나도 믿겠다”고 고국에 돌아가 기독교인이 된 경우가 많다. 인권이 종교나 민족 보다 우선해야 함을 룻은 몸으로 말하고 있다.

2) “함께 밥을 먹읍시다.”

“밭에 나가 볼까 합니다. 혹시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주울까 합니다. 룻은 생계를 위해 이삭줍기를 나간다. 이삭을 주으러 나가면서 룻은 불안하다. 낮 선 땅에서 친절한 사람을 만났으면 하는 요행을 바랄 뿐이다. 보아스가 룻을 누구냐고 묻자 일꾼들이 이렇게 말한다. 일꾼은 룻을 나오미의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이방여인인 모압여인으로 소개한다. ”나오미와 함께 모압지방에서 온 모압여인입니다.“ 룻이 모압여인인 것을 알았어도 개의치 않고 보아스는 룻에게 말한다. ”우리 밭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도록 하시오. 남자 일꾼들에게 대울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겠소. 목이 마르거든 주저하지 말고 물단지에 가서 물을 마시시오.“ 점심시간이 되자 보아스는 룻을 불러 음식을 넉넉하게 나눠준다. 보아스는 일꾼들에게 룻을 괴롭히지 말고 오히려 단에서 이삭을 조금씩 뽑아 흘려 룻이 이삭을 넉넉하게 줍도록 배려한다. 룻은 저녁때까지 이삭을 줍고 집에 돌아와 점심 때 먹고 남은 음식을 나오미에게 내놓았다. 룻은 추수가 끝날 때까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줍기를 하였

다.

룻이 낯선 나라에서 이삭줍기를 한 것은 생계 때문이었다. 마찬가지로 생계 때문에 많은 외국인들이 그들의 나라를 등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한다.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하는 일은 룻의 이삭줍기 보다 더 힘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지 않는 더럽고 위험하고 어려운 일들을 한다. 그런데 이들에게 우리는 밥도 넉넉히 주지 않음은 물론이고 온갖 폭력을 행사한다. 더욱이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불법임을 미끼로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는다. 이에 비해 보아스는 이삭줍기를 하는 룻에게 넉넉히 베푼다. 룻이 먹고 남아 싸 가지고 가서 나오미에게 줄 정도다. 그리고 젊은 일꾼이 룻을 못 살게 굴지 않도록 한다. 이런 보아스의 태도에 룻은 이렇게 말한다. “저를 이처럼 위로하여 주시니 보잘 것 없는 이 몸이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외국인 노동자에게 용기를 주고 있는가? 우리나라 실정은 어떤가? 배고프다고 호소하니까 통닭 한 마리를 시켜서 12명이 먹으라고 주는가 하면 작업에 방해가 된다고 물먹으로도 못가게 하고 화장실 출입도 통제한다.

4) 외국인 여성 노동자를 성적 착취와 성의 상품화에서 보호해야 한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삭줍기를 허락하고 자비를 베푼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신에 따른 것이다. 지난한 외국인을 보호하도록 한 공동체의 윤리는 룻기 시대에 이르러서는 잘 지켜지지 않은 듯하다. 외국인이나 과부, 고아들을 돌보도록 한 율법에 보장된 권리가 퇴색되어 부자들이나 특권층의 호의나 자비로운 마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다. “밭에 나가 볼까 합니다. 혹시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주울까 합니다.”라는 룻의 이 말은 외국인, 과부를 보호하던 법이 이미 퇴색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그런데 보아스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법의 정신에 따라서 이방인 여성인 룻을 돌보았다. 이삭줍기를 허용했을 뿐만 아니라 먹을 것, 마실 것을 주었으며 그의 일꾼들에게 룻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보아스의 이런 행동은 오늘날 외국인 노동자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좋은 본보기가 된다. 자선적인 차원이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함은 물론 여성의 성을 함부로 짓밟지 못하도록 보호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공동체의 법정신임을 깨우쳐 준다.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여성 노동자는 전체 외국인 노동자의 30%로 6만명 가량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여성 노동자들은 성차별에 의해 남자 외국인들 보다 적은 월급을 받고 있으며 성폭행의 위협 앞에 노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매매춘의 학정이 이들 외국인 여성 노동자들 앞에 도사리고 있다. 여성의 상품화가 외국인 여성 노동자를 겨냥하고 있다. 한겨레 21 1997년 3월 27일자에 의하면 불법비자를 가지고 들어와 이미 기지촌에서 유홍가, 밤거리에까지 성과 관련된 직종에 외국인 여성들이 내몰리고 있다. 매춘의 국제화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현실에서 매매춘으로 희생되는 외국인 여성 노동자의 인권보호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3) 자기 권리를 적극적으로 찾도록 도와야 한다.

룻기는 모두 4장으로 되어 있다. 전반부 2장은 룻이 이삭줍는 이야기로 끝이 나고 후반부 3장에서 4장은 룻이 나오미의 계획 아래 보아스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아 나오미의 대를 이어주는 이야기로 끝이 난다. 그런데 룻과 보아스의 결혼은 하나의 사랑 이야기라기

보다는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자기들의 권리를 쟁취하는 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임과 동시에 가난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법까지라도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준다.

롯기 3장은 나오미가 롯과 보아스의 결혼을 추진하는 장면이다. 롯과 보아스의 결혼이야기는 가난한 사람들의 생존권 요구와 결부되어 있다. 가난한 자들의 요구를 수요하고 억눌린 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공동체의 윤리를 반영하고 있다. 나오미는 롯의 행보를 위해 보아스와 롯을 결혼시키려고 한다. 롯은 나오미의 계획에 따라 밤중에 보아스의 발끝에 가서 살며시 눕는다. 보아스가 누구냐고 묻자 롯이 대답한다.“집니다. 어른의 품에 저를 안아주십시오. 이로신은 속량자로서 저를 맡아야 할 분입니다.” 영어번역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저를 당신의 부인으로 삼아주십시오.(living bible)” 하고 되어 있다. 롯의 이러한 행동은 신명기 25:5-10의 자식이 없이 남편이 죽었을 경우 죽은 형의 동생이 형수를 맞아들여 그 형의 후손과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어야 한다는 ‘레비라토’ 율법에 근거한 것이다. 롯기에서는 이 레비라토 율법을 직계 형제가 아닌 집안 친척에게까지 확대시키고 있다. 가난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한계가 없음을 뜻 한다. 롯과 나오미는 보아스에게 레비라토 법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 나오미와 롯의 이러한 자세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그저 가진 자들, 힘있는 자들의 자선이나 처분만 바라시는 안됨은 물론 자기들의 권리 인정받기 위해서는 용기와 지혜로 나서야 함을 뜻한다. 인권이 무시되는 불의한 사회에서의 권리회복은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투쟁에서 비롯됨을 롯과 나오미가 가르쳐준다.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보호 문제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산업연수생으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비인간적인 노동조건에 대해 항의했을 때 처우개선이 된 사례가 있다. 1995년 1월 산재를 당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한 불법취업 외국인노동자들이 산재보상보험의 적용을 요구하며 한달간 농성을 벌였다. 이 비인간적인 대우가 국제적으로 까지 비난의 대상이 되자 대통령지시로 불법취업자도 산재보상을 받게 되었다. 또한 임금체불과 강제근로 등에 대해 노동부에서 행정지도를 하도록 했다.¹⁰⁾ 역시 1995년 1월에 네팔인 산업연수생 13명이 “제발 때리지 마세요. 우리도 사람입니다. 월급을 제손에 주세요. 여권을 돌려주세요” 등을 외치며 명동성당 앞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을 벌였다. 이 농성으로 산업기술연수생들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되었고 시민운동과 노동운동단체들이 문제해결에 동참하도록 만들었다. 이에 정부는 ‘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 이 지침에 의하면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도 산재보상보험, 의료보험의 적용, 강제근로금지, 폭행금지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¹¹⁾

교회가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일을 할 때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의식화작업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외국인근로자선교를 하는 방법에서 70년대 산업선교식의 방식은 선교의 장애요인이 된다고 비판하는 기관들도 있지만 자기 권리를 쟁취하는 의식화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4)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법을 제정하고 악법을 바꾸는 일에 교회가 나서야 한다.

10. 그러나 불법노동자의 상당수가 산업보호법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5인 미만의 작업장에서 취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

11.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 보호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나서자 ‘외국인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목인할 수 없다며 이들이 머물고 있는 성남외국인노동자의 집에 수차례 경고를 한바 있다. 급기야 임신중절문제로 진료의뢰차 들린 네팔인 부부를 불법체류 외국인단속이며 강제연행하자 이를 말리던 소장 김해성목사와 사무국장 양혜우집사를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하였다.

나오미와 롯의 소망을 안 보아스는 나오미 집안의 유산지분으로 있는 땅을 속량시키고 이를 통해서 레비라토법을 이행하려 한다. 레위기 25:24-28의 속량법에 의하면 누가 가난하여 땅을 팔 경우 가까운 친척이 사서 나중에 형편이 좋아질 경우 되무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 능력이 없어 되살 수 없다해도 희년에는 되돌려주어야 한다. 보아스는 이 법에 따라 나오미의 제일 가까운 친척을 찾아가 나오미가 팔려고 내어놓은 땅을 사라고 한다. 그 친척이 사겠다고 하자 그 땅을 사는 대신 롯에게 레비라토법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한다. “나오미에게서 밭을 넘겨받는 날 당신은 고인의 아내 모압 여자 롯도 떠맡아야 하오. 그리하여 고인의 이름을 이어 그의 유산을 차지할 사람을 놓아주어야 하오.” 그러자 자기 재산만 손해볼 것 같아 그 친척은 자기 속량자의 의무와 그 권리를 포기한다¹²⁾. 그러자 보아스는 나오미의 땅을 사기로 하고 이렇게 말한다. “나는 마흘론의 아내 모압여자 롯까지도 유산과 함께 아내로 얹었습니다. 나는 고인의 이름을 이어 그 유산을 차지할 사람을 놓아주어서 고인의 이름이 그 형제들과 함께 남아 이 고장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본래는 따로따로 속량법과 레비라토법을 서로 뒤섞어 적용하고 있다. 이 상황은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보호하는 것은 어떤 법 보다 우선하며 또한 가난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률 마련 바꿀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런데 우리사회는 어떤가? 외국인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 하나 없다. 외국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제정에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5) 인종편견을 버려야 한다.

현재도 간간히 문제가 되고 있지만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에 따른 국제결혼으로 야기되는 문제가 많을 것이다. 사랑에는 국경도 없다는데 현재 남가중심으로 되어있는 한국 가족법에 따른 고통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괴롭힐 것이다. 법도 법이지만 배타적인 인종편견을 갖고 있는 한국인의 의식이 더 큰 문제다. 롯기는 이 인종적 편견을 거부한다. 나오미는 외국인 여성을 며느리로 맞았으며 그 며느리와 일심동체를 이루어 산다. 보아스는 이방여인과 결혼하는 걸 주저하지 않았으며 이 이방여인이 결국 이스라엘의 민족의 중심이 되는 다윗왕의 종조모가 되는데 롯이 아기를 낳자 이스라엘 사람은 롯의 행위를 그들의 옛 조상인 유다의 며느리로 유다의 부인이 된 다말의 행위에 견주어 롯을 축복한다. 이스라엘 민족과의 동질성을 부여한 것이다. 우리가 외국인 선교를 한다고 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을 배타적으로 대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하나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초대교회에서는 세례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유다인과 이방인이 하나”라는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았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국인과 외국인이 하나라는 고백이 필요하다. 이런 고백을 기반으로 선교를 할 때만이 우리는 진실된 외국인 선교를 하게 될 것이다.

보아스는 나오미와 롯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답했다. 그러나 오늘날 대다수의 한국사람들은 보아스처럼 외국인 노동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보아스는 나오미와 롯의 권리투쟁에 연대한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외국인 여성인 롯과 결혼해서 나오미와 롯의 가정을 보호해준다. 오늘날 보아스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보아스는 더 이상 한 개인이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들과 아무런 조건 없이 연대하는 사람들

11. 이 속량자가 롯과 결혼하지 않으려는 것은 롯이 이방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에서 입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의 상징이며 한국교회의 외국인여성선교를 위한 이상적인 모델이다.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선교나 외국인여성노동자를 위한 선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교회가 외국인노동자들과 연대해서 교회를 개방하여 그들의 인권을 찾아주고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복지정책을 세워주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 함께 나누다 보면 선교는 저절로 이루어 진다고 본다.

IV. 교회여성연합회의 외국인여성노동자상담소의 과제 제언

교회여성연합회가 외국인 여성 노동자 상담소를 개원한지 1년이 되었다. 그 사이 중 하나로 ‘외국인 여성 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를 내놓아 외국인 여성 노동자의 실태를 아는데 많은 도움을 주리라고 믿는다. 이제 그 실태조사서를 기반으로 교회여성연합회가 외국인 여성 노동문제에 대해 특화된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한다. 이미 여성교회도 외국인 여성 노동자를 위한 센터를 열었고 여기저기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선교를 하고 있다. 차제에 교회여성연합회는 그동안 해오던 ‘기생관광문제’와 ‘매매춘문제’와 맥락을 같이 하여 ‘성산업에 내몰리고 있는 외국인여성노동자문제’를 특화해서 매진하기를 제언한다. 이미 기지촌에 필리핀 여성들이 들어와 있고 러시아 여성들이 클럽의 댄서로, 거리의 매춘부로 일하고 있으며 동남아 여인들이 성상품의 모델로 고용되고 있다. 이들이 한국에 온 것은 남성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돈을 벌러 온 것이고 한국의 성상품 업자들은 싼값으로 이들을 부린다. 한국에 들어 온 외국 여성노동자들은 남성들이 겪는 차별 외에도 여성으로 겪는 성폭력, 매매춘, 혼혈아 출생과 임신중절 등의 문제가 덧씌워지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교회여성연합회가 지난 20년동안 써온 매매춘 문제의 연장 선상에서 “성산업과 관련한 외국인 여성 노동자문제”에 관심하는 것은 사업상에도 일관성이 있고 다른 어느 교회여성단체 보다도 이 일을 하는데 적합하다고 본다. 또 이 일을 통해서 교회여성연합회의 위상도 높아지리라고 본다.